

경인장애인선교회 정관 최종정리본

경인 평생교육·나눔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수정안

※ 본 문서는 기존 「경인 평생교육·나눔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에서 벤엘교회, 벤엘축복선교회, 전북 완주 연수원, 완주 기숙교육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경인교회 및 경인장애인선교회와의 공익 협력 방향을 반영하여 정리한 수정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명칭은 경인 평생교육·나눔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 어르신, 취약계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평생교육, AI 디지털 교육, 복지·나눔 서비스, 자립 지원 및 일자리 연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본원칙)

- ① 조합은 비영리성과 공익성을 기본으로 운영한다.
- ② 조합은 장애인, 어르신, 취약계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과 복지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 ③ 조합의 교육사업은 가능한 한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후원금, 기부금, 보조금, 협력기관 지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④ 조합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영리 목적을 위하여 운영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에 둔다.
- ② 조합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 또는 국외에 지사무소, 교육장, 상담소, 나눔센터, 협력센터 등을 둘 수 있다.
- ③ 조합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평생교육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비영리단체, 민간기관 등이 운영하거나 제공하는 교육장, 회의실, 강당, 복지관, 주민센터, 평생학습관, 도서관, 학교 시설, 기타 적합한 장소를 대관하거나 협약하여 교육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조합은 고정된 교육원 외에도 사업 목적에 적합한 장소를 임시교육장, 순회교육장, 현장교육장 또는 협력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대한민국 전국으로 한다. 다만,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해외 교육, 재능기부, 나눔 및 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공고방법)

- ① 조합의 공고는 조합의 주된 사무소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②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일간지,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 공고할 수 있다.

제7조 (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화, 모바일 메신저 등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조합의 책무)

- ①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활동을 적극 수행한다.
- ② 조합은 장애인, 어르신, 취약계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③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장애인단체, 평생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기업 및 전문가 단체와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정치적 중립)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거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 (조합원의 구분)

조합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교육, 복지, 나눔, 콘텐츠, 상담, 자립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는 자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교육, 복지, 나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되어 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의 사업에 자원봉사 또는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자

후원자조합원: 조합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후원, 기부, 협력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자

제12조 (가입 절차)

- ①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③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3조 (조합원의 권리)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조합원은 정관, 규약, 규정,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회계자료 등 조합 운영에 관한 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정관, 규약 및 규정의 준수

총회 및 이사회 의사결사항 이행

출자금의 납입

조합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지 않을 의무

장애인, 어르신, 취약계층 및 교육생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

조합의 비영리성과 공익성을 해치지 않을 의무

제15조 (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제16조 (당연탈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탈퇴된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망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인 조합원이 해산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제17조 (제명)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출자금 또는 경비 납입 등 조합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관, 규약 또는 운영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조합의 비영리성과 공익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장애인, 어르신, 취약계층, 교육생 또는 조합원에게 폭언, 폭력, 차별, 금전 피해 등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

제18조 (제명 절차)

①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명 의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제명된 조합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지분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합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경우 조합은 그 채무를 공제하거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0조 (청구권의 소멸시효)

지분환급청구권은 탈퇴 또는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3장 출자금과 적립금

제21조 (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③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있어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2조 (출자증서의 교부)

① 이사장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출자좌수 및 출자액을 기재한 출자증서 또는 출자 확인 증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출자증서 또는 출자 확인 증표에는 이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3조 (출자금의 양도 제한)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는 출자지분을 양도받을 수 없다.

제24조 (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법정적립금은 조합의 손실 보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26조 (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에서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총회의 결의에 따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장애인, 어르신, 취약계층,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무상교육, 복지, 나눔, 자립지원, 일자리 연계 및 공익사업에 우선 사용한다.

제27조 (배당금지)

조합은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하지 아니하며, 잉여금은 조합의 공익 목적사업과 법정·임의적립금으로 사용한다.

제4장 총회

제28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제29조 (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30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1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소집을 청구한 경우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청구한 경우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2조 (총회의 소집통지)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관변경, 합병, 분할, 해산 등 중요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 정관에서 정한 특별의결에 따른다.

③ 총회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고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1인 1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 조합원은 임직원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5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정관의 변경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임원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의 승인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조합원의 제명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중요사항

그 밖에 이사회 또는 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 (총회의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7조 (대의원회)

- ① 조합원의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대의원회의 구성, 선출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5장 이사회 및 임원

제38조 (임원의 정수)

- ① 조합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 ② 이사 및 감사의 정수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39조 (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관계 법령에서 임원 결격사유로 정한 자

조합의 목적과 공익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전력이 있는 자

제40조 (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41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4년 이내에서 총회가 정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관계 법령과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2조 (이사장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4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조합의 재산상황과 회계에 대한 감사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는 경우 이사회 및 총회 보고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 청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제45조 (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 등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46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조합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한 경우

조합의 비영리성과 공익성을 해친 경우

직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경우

제47조 (임원의 보수)

①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조합의 실무를 직접 수행하는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여비 및 활동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 (겸직금지)

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조합의 직원 또는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제49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주요 보직 직원의 임면은 이사회 의결을 거칠 수 있다.

제50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제51조 (이사회 소집)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52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조합의 기본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 수립

규정 및 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총회에 부칠 안건 및 총회 위임사항

직원 채용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장, 지사무소, 협력센터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후원금, 기부금, 보조금 및 물품후원 관리에 관한 사항

협약, 공동사업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

제53조 (이사회 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5조 (자문위원 등)

조합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장 사업

제56조 (사업의 목적)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 복지, 나눔, 자립지원, 재능기부,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수행한다.

제57조 (주사업의 비율)

조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사업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주사업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8조 (사업의 종류)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장애인, 어르신, 취약계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

AI 디지털 교육, 챗봇 교육, 스마트폰·컴퓨터·인터넷 활용 교육 사업

생성형 AI, 콘텐츠 제작, 영상 제작, 문서 작성, 온라인 활용 교육 사업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및 생활문해교육 사업

장애인, 어르신,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및 일자리 연계 사업

교육 콘텐츠, 교재, 영상, 온라인 강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교육 강사, 디지털 교육지도사, AI 활용지도사 등 인재 양성 사업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복지연계 및 생활지원 사업

후원물품 모집, 배분, 나눔 행사 및 지역사회 복지 협력 사업

푸드뱅크, 푸드마켓, 급식, 반찬나눔 등 식생활 지원 관련 협력 사업

자원봉사자 발굴, 교육, 배치 및 관리 사업

전문가 재능기부 유치 및 공익활동 연계 사업

국내외 교육, 나눔, 재능기부 및 공익 협력사업

법무부, 보호관찰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봉사활동 연계, 교육, 선도

및 관리 지원 사업

자원봉사센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복지기관, 비영리단체 등을 통한 자원봉사자 모집, 등록, 배치 및 활동관리 사업

전문가, 강사, 기술자, 예술인, 언론인, 상담가, 법률·세무·행정 전문가 등 재능기부자와 기능기부자의 협력 및 활동 연계 사업

경인장애인선교회, 경인교회 및 관련 공익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교육·복지·나눔 사업

인터넷신문, 지역언론,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공익 홍보 및 교육정보 제공 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위탁·공모·보조사업

그 밖에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업

제59조 (무상교육의 원칙)

- ① 조합은 장애인, 어르신, 취약계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을 100% 무상교육으로 제공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한다.
- ② 무상교육의 범위에는 AI 교육, 디지털 기초교육, 챗봇 교육, 스마트폰 교육, 컴퓨터 교육, 콘텐츠 제작 교육, 생활문제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③ 무상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후원금, 기부금, 보조금, 공모사업비, 협력기관 지원금, 조합의 목적사업 수입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60조 (사업의 이용)

- ①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을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61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 ①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공익 목적의 교육, 복지, 나눔, 위탁사업, 보조사업 또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경우 비조합원에게도 사업을 제공할 수 있다.

제62조 (수수료 및 사용료)

- ① 조합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 ② 다만 장애인, 어르신, 취약계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무상교육과 공익사업은 무상 제공을 우선한다.
- ③ 부득이하게 실비 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63조 (인허가 사업의 처리)

푸드뱅크, 평생교육시설, 민간자격, 사회복지시설, 직업훈련, 보조금 사업,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계 사업 등 관계 법령상 허가·인가·등록·신고 또는 협약이 필요한 사업은 관할 관청 또는 관계 기관의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한다.

제63조의2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

- ① 조합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복지기관, 비영리단체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등록·배치·관리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교육, 상담, 복지, 문화예술, AI 디지털 교육, 콘텐츠 제작, 행정, 법률, 세무, 회계, 홍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재능기부 또는 기능기부 협조를 받을 수 있다.
- ③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 기능기부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재료비, 강사수당, 활동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실비 지급 기준과 절차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회계

제64조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5조 (회계의 구분)

-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특정 후원금, 기부금, 보조금, 위탁사업비 등 분리 관리가 필요한 자금은 이사회의 결의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6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총회에서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유지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67조 (결산 등)

-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 (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미처분이익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69조 (운영의 공개)

- ① 조합은 결산보고서, 사업계획, 총회 의결사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후원금, 기부금, 보조금 및 공익사업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0조 (기부금의 관리 및 공개)

- ① 조합은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 단체, 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 및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 ② 기부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과 사용 내역을 관리·공개한다.

제71조 (예산의 변경)

- 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예산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2조 (경영공시자료의 비치)

조합은 정관, 규약, 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조합원 명부 등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3조 (합병과 분할)

- ① 조합은 총회의 특별의결을 거쳐 다른 사회적협동조합과 합병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 ② 합병 또는 분할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74조 (해산)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한다.

총회의 특별의결이 있는 경우

합병 또는 분할된 경우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파산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5조 (청산인)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 (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7조 (잔여재산의 처분)

- ① 조합이 해산하여 부채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남은 경우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 ②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귀속하거나 기부한다.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장애인, 어르신, 취약계층 지원 목적의 공익단체

경인장애인선교회 또는 경인교회 등 유사한 공익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78조 (청산종결)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을 처분한 후 지체 없이 결산을 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종결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79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 (규약 및 규정)

본 정관의 시행과 조합의 운영, 무상교육, AI교육, 평생교육, 푸드뱅크 협력, 재능기부, 자원봉사, 후원금 관리, 부설기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81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관련 법령과 통상적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일)

본 조합의 설립일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 한다.

제3조 (기존 추진사업의 승계)

조합 설립 전 발기인 또는 협력기관이 추진한 장애인, 어르신, 취약계층,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무상교육, AI교육, 평생교육, 복지, 나눔, 재능기부, 푸드뱅크 협력 및 공익사업은 조합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승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협력기관과의 관계)

조합은 경인장애인선교회, 경인교회 및 기타 공익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회계, 운영, 의사결정 및 책임은 본 정관과 관계 법령에 따라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제5조 (발기인)

이 정관을 작성하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 전원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

발기인 명단

2026년 월 일

발기인 대표 : 김재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1967.01.21.

발기인 : _____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_____

발기인 : _____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_____

발기인 : _____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_____

발기인 : _____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_____

발기인 : _____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_____